

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5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10월 17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양천자원회수시설은 「폐기물관리법」 제5조 및 「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'23. 3. 31.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
- 나.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·관리를 담당할 위탁운영사업자를 공개 선정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양천자원회수시설 운영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- 추진근거
 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5조(폐기물의 광역 처리)
 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,

제 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- 「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5조 (관리·운영의 위탁)

○ 필요성

- 생활폐기물 반입·처리 및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·관리 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

다. 위탁사무 내용

-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반입 및 처리
- 소각, 환경설비 등 관련 시설의 운전 및 유지·보수
- 중온수 및 전력 생산·판매
- 자원회수시설의 부대시설 유지관리
-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비, 용역, 물품 등 계약·관리
- 일반사무처리
- 기타 자원회수시설 운영·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등

라. 시설개요

- 시설명 : 양천자원회수시설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1121(목동)
- 부지면적 : 16,914 m^2
- 시설규모 :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400톤/일(200톤/일 × 2기)
- 처리권역 : 3개 자치구(양천구, 강서구, 영등포구)

- 주 용 도 :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소각열 회수하여 자원화
- 주요장비 : 소각설비, 소각재처리설비, 연소가스처리설비 등

마. 위탁기간 : 3년 ('23.04.01. ~ '26.03.31.)

○ 민간위탁 추진현황

- 1차 : '96.03.01.~'99.03.03. (3년, 선정건설(주))
 - 2차 : '99.04.01.~'02.03.31. (3년, SK건설(주))
 - 3차 : '02.04.01.~'05.03.31. (3년, 한국시거스(주))
 - 4차 : '05.04.01.~'08.03.31. (3년, 한국시거스(주))
 - 5차 : '08.04.01.~'11.04.30. (3년, 한국시거스(주))
 - 6차 : '11.05.01.~'13.12.31. (3년, 한국시거스(주))
 - 7차 : '14.01.01.~'17.03.31. (3년, 한국시거스(주))
 - 8차 : '17.04.01.~'20.03.31. (3년, 한국시거스(주))
 - 9차 : '20.04.01.~'23.03.31. (3년, 환경에너지솔루션(주))
- ※ 한국시거스(주) 인수합병으로 사명 환경에너지솔루션(주) 변경(2022.1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

사. 소요예산(비정산비 기준) : 18,155백만원('23. 4.~'26. 3.)
 (1차년도 : 5,874백만원, 2차년도 : 6,050백만원, 3차년도 : 6,231백만원)

아. 기대효과

-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 및 예산절감 효과
- 전문적인 시설 운영·관리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

자. 2022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('22.10.10.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폐기물관리법」 제5조

제5조(폐기물의 광역 관리) ① 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(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)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6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2.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○ 「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5조

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영 제35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원회수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3. 자원회수시설을 설계·시공한 자,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실적이 있는 국내외 업자, 자원회수시설을 설계·시공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외국 업체와 자원회수시설 관리·운영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관리팀 이성희 (☎2133-3682)